

## 2 휴·복직 업무처리 일반사항

### 가. 근거

- 1)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(휴직) 및 제45조(휴직기간 등)
- 2) 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9조의2(육아휴직), 제19조의3(고용휴직) 제1호, 제19조의4(가족돌봄휴직)
- 3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3조(휴직 · 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),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3조(「국가공무원법」과의 관계) 제2항
- 4) 「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 규정」(봉급 및 수당지급)
- 5)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(경력기간계산) 및 「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」 제24조(휴직의 결정)
- 6) 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등(노조전임자의 지위)
- 7)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

### 나. 휴직사유 및 기간

- 1) 직권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, 제45조)

종 류	질병휴직	병역휴직	생사불명	법정의무수행	노조전임자
근거	제1호	제2호	제3호	제4호	제11호
요건	신체상 ·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	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	천재지변이나 전시 · 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	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	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
기간	1년 이내(1년 연장 가능) 공무상질병 3년(2년 연장 가능)	복무기간	3월 이내	의무복무기간	전임기간
승진평정 경력기간	• 경력평정: 제외 단,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 경력평정에 산입	• 경력평정: 산입	• 경력평정: 제외	• 경력평정: 산입	• 경력평정: 산입
승급	• 승급제한 ※ 단,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 승급인정	• 승급인정	• 승급제한	• 승급인정	• 승급인정
결원보충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결원보충 불가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	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가능
보수지급	• 봉급 70% 지급 (1년 초과 50% 지급) •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
수당	• 공통수당: 봉급과 동률로 지급 • 기타수당: 휴직사유별 차등 지급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	지급안함
기타	의사의 진단서(휴직 시), 완쾌진단서(복직 시) 첨부				경기도교육청 노조 전임자 휴직 협약문